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298
- 제 출 자 : 김혜련 의원(외 10명)
- 제 출 일 : 2017년 11월 28일
- 회 부 일 : 2017년 11월 29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는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함(안 제2조제9호 신설).
- 나.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제5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2017. 12. 4. ~ 2018. 12. 11)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의 규정에 ‘정보취약계층’을 신설하고(안 제2조제9호),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의 범위를 ‘정보격차 해소’에서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으로 확대(안 제5조제3항제5호)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장애인, 노령자 등으로 분류되는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정보이용 시설의 확대 및 무료교육과 같은 지속적인 정보화 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화 선도계층과의 정보격차가 오히려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보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나. 세부 내용 검토

1) ‘정보취약계층’ 정의 규정 추가 신설(안 제2조제9호)

- 안 제2조제9호 신설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이하, 「웹접근성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정보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정보불평등구조를 완화하도록 관심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9. ~ 14.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u>“정보취약계층”이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u> 10. ~ 15. (현행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 다만, 개정안 중 ‘「웹접근성 조례」 제2조제1호의 내용’과 ‘후미’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바, 불필요한 중복적 표현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 조례의 내용중 정보취약계층의 대상을 ‘장애인과 고령자 등으로 적시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포괄주의방식의 규정은 그 대상 범위를 한정하는데 혼란의 여지가 있는 바, 그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와 다른 시도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가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3개 광역시도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을 취하고 있음.

2) 정보화 기본계획 범위 확장(안 제5조제3항제5호)

- 안 제5조제3항제5호는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사항중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에 ‘웹접근성 향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알권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의미(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9호)
 - ※ 웹접근성은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령자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이 없어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2017년 서울시 웹접근성 수준 향상 계획)
- 또한, 「웹접근성 조례」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는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본 조례(「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의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두 조례간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개정조례안이 선언적인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위 법령(「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웹접근성 수준 향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또한, 정보기획관은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로 정보화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이때까지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